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중 제27조의2를 제25조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서류송달의 방법)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에 의하여 통·리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송달부 교부근거에 의하여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시세심의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결정 기타 시세제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세심의위원회(이하이조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세제분과위원회와 시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를 제16조의2로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세율)법제188조의제6항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 (1) 주택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초과 1,600만원이하	3만6천원+1,2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5
1,600만원초과 2,200만원이하	5만6천원+1,6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10
2,2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11만6천원+2,2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30
3,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35만6천원+3,0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50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70

-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 (3) 영에서 정하는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 지역 및 시조례로 정한 상업지역·녹지지역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 용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6
- (4) 제1목 내지 제3목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3

2. 선박

- (1) 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 (2) 제1목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 3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시세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제14조의제2항의 “이의신청분과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시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로 본다
-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8조(허가등의제한)시장은 영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등의제한) - - - 영제25조의 -	법조항변경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허가등의 종류 3. 허가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영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시통리.반 설치조례에 의하여 통장과 리장.반장을 통하여 교부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송달부교부금거에 의하여 서류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서류송달 방법신설
<개 정> 제14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제14조(시세심의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 - - - -	지방세심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이조에서“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 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이상 10인이하로 구성한다.

④ — ⑥ (생략)

<신설>

----- 시세제도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세심의위원회(이하이조에서“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
----- 시세제분과위원회와
시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
분과위원회 -----

③ -----
----- “20인이상 30인”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의 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위원회(이하“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위원회를
시세심의
위원회로
변경

과세전적
부심사위
원회신설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기타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

④적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세율)법제188조제6항규정에 의한 재산세 세율은 다음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서울명시
하고저함

1. 건축물

(1)주 택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초과 1,600만원이하	3만6천원+1,2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5
1,600만원초과 2,200만원이하	5만6천원+1,6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10
2,2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11만6천원+2,2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30
3,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35만6천원+3,0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50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초과금액의1,000분의70

제16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생 략)	(2) <u>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u> <u>: 그 가액의 1,000분의 50</u> (3) <u>영에서 점하는 도시계획법및 기</u> <u>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u> <u>주거지역및 시조례로정한 상업지역,</u> <u>녹지지역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 1,000분의6</u> (4) <u>제1목내지 제3목이외의 건축물</u> <u>: 그 가액의 1,000분의3</u> 2. <u>선 박</u> (1) <u>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u> <u>50</u> (2) <u>제1목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u> <u>1,000분의3</u> 3. <u>항공기 : 그 가액의 1,000분의3</u> 제16조의2(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내용은 현행16조와 같음)	제16조를 제16조의 2로변경
-------------------------------------	---	---------------------------------

'세계속에 우뚝솟은 우리 경기도'



경 기 도

우) 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번지 / ☎ (0331) 249-4153 / 담당자 최 영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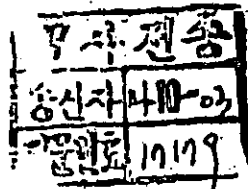
문서번호 세정 13430 - 1970

시행일자 1997. 10. 21. (97)

(경유)

발음 받는곳 참조

참조



선결			지	
접	입자	97.10.21	시	
수	번호	6807	결	국 장
처 리 과	세 무 과		재	과 장 전 결
담 당 자	김 영 흥		공	기 장
			람	계
				매

제목 지방세일반조례 정비계획에 따른 회의개최

1. 내무부 세제 13400-335 ('97. 10. 10)호와 관련입니다.

2. 시.군세 일반조례정비와 관련 실무자회의 및 작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코자 하니 시.군조례 담당공무원은 시간임수하여 참석하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97. 10. 24. ~ 10. 25 (2일) 09: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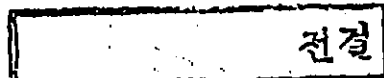
나. 장 소 : 도청 생활관 307호

다. 참석대상 : 시.군조례담당공무원

라. 지 참 문 : 시.군 일반조례 및 시.군세부과징수규칙 개정시안 작성'지참

덧붙임 : 지방세 일반조례정비계획 1부. 끝.

경 기 도 지



받는곳 : 러 [세정(세무, 재무, 부과, 징수)과장]

“세계속에 우뚝 솟은 우리 경기도”

경 기 도

모사전송	
송신자	410-03
전문번호	112/0

우) 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번지 / ☎ (0331) 249-4173 / 담당 주 성 현

문서번호 세정 13430 - 1981

시행일자 1997. 10. 22 (1 년)

(정유)

받음 받는곳참조

참조

선결			지	
접	일자 시간	97. 10. 22	시	
수	번호	6839	결	국 참
처 리 과	세 무 과		재	과 참
담 당 자	김 영 웅		공	계 참
			람	계
				明

제 목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처리 지침 시달

도세제장

재산세제장
세무조사제장

1. 내부부 세정 13430-489 (97. 10. 18) 호의 이첩시달 입니다.

2. 금번 97. 10. 1부터 개정된 지방세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처리 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처리 지침 1부. 끝.

경 기 도 지



세 무 국 장 전결

받는곳 : 세 (세정, 세무, 부과, 재무 과장)